

제2614호
2018. 11. 2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려

제1433호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43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14
제1435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7
제143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143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8
제14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3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3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율방범대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법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법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외국인 치안봉사단 단원(이하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이라 한다)은 외국인 등으로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범죄 신고

-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각종 지원 활동
-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
-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율방범대는”을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은”으로 하며,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자율방범대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자율방범대원”을 “자율방범대원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율방범대원”을 “소속 대원 및 단원”으로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자율방범대원”을 “자율방범대원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방범대원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각 단체의 소속 대원 및 단원에게”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u>자율방범대</u> 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자율방범대</u> <u>및 외국인 치안봉사단</u> ----- -----.</p>
<p>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 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u>호와 같다.</u></p> <p>1.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p>
<p><신 설></p>	<p>2.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란 <u>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 을 말한다.</u></p>
<p><신 설></p>	<p>3.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p>
<p>제3조(조직 및 구성) ① ~ ② (생략)</p>	<p>제3조(조직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③ <u>외국인 치안봉사단</u> <u>단위</u>(이하 “외국인 치안봉사단 원”이라 한다)은 외국인 등으로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한다.</p> <p>④ <u>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u></p>

제4조(임무) ① (생략)

<신 설>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범위) (생략)

제6조(신고 등) ① ~ ④ (생략)

<신 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

제4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 밀집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범죄 신고**
-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각종 자원 활동**
-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
- 4. 그 밖에 **외국인**과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③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제1항 및 제2항**-----

제5조(활동범위)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0조**-----
- 5. -----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
- ② -----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생략)

-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 2. (생략)
-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 ② 생략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원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 제12조 (생략)

--, 자율방범대원 및 외국인 차안봉사단의 -----
-----, 제9조-----.

③ (현행과 같음)

- 1.-----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차안봉사단의-----
- 2. (현행과 같음)
- 3. 제9조에-----
- 4. ----- 소속 대원 및 단원-----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차안봉사단에-----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예산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차안봉사단은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활동 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 -----

----- 자율방범대원 및 외국인 차안봉사단원
에-----.

제11조(포상) -----

-----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차안봉사단과
각 단체의 소속 대원 및 단원에게 -----
-----.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 1. 치안봉사단명(대표자명) :
- 2. 단 원 수 :
- 3. 순찰일시/횟수 :
- 4. 단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자영업	회사원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m ²)	설 치 재 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題名) 개정
- 나.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정의(제2조)
- 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제4조)
- 라.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6조)
- 마.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경비 지원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제7조 ~ 제8조)
- 바.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교육 및 포상 대상에 포함(제10조 ~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34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에 한하며,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3.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보조대상은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 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

③ 보조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 1. 법 제17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 2. 친목 도모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 4. 최근 1년 이상 중구 관내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5.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5조(보조사업 등의 결정) ① 구청장은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검토하여「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2.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 4.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3. 사업수행단체가 사업의 취소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8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

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거나 교부 목적 및 용도 외로 경비를 사용한 때
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5.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중구 관내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정함(제4조).
- 다.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함(제6조)
-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
- 마.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도록 함(제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35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서울특별시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2.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3.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 5.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6. 중구 소상공인 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
-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채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4조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및 사무실 설치
-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 2. 소상공인 지원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전문가, 의회의원, 관 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u>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생략)</p> <p>1. "<u>도시형소공인</u>"(이하 "소공인"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p> <p>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u>소상공인</u>일 것</p> <p>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u>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u>」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p> <p>2. (생략)</p> <p>3. "<u>창업</u>"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서 <u>소공인</u>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4. "<u>특별보증</u>"이란 소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울특별시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소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p> <p>제4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u>소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p>1. 소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p> <p>2. 소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p> <p>3. 소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u>소상공인</u>의-----<u>소상공인</u>의-----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u>소상공인</u>"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서 정한 <u>소상공인</u>을 말한다.</p> <p><삭 제></p> <p>2. (현행과 같음)</p> <p>3. -----<u>소상공인</u>이----- -----.</p> <p>4. ----- <u>소상공인</u>이----- -----.</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은 <u>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u></p> <p>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구청장은 <u>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4. (생략)

5. 그 밖에 소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중구 소상공인 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별보증 지원) ① ----- 소상공인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각 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및 사무실 설치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으로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소상공인 지원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재정국의 과장 2명
2.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생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략)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
소상공인 -----
-----.

② ----- 소상공인의 -----
----- 소상공인 -----
-----.

제9조(지원체계) ① ----- 소상공인 -----
-----.

② ----- 소상공인 -----
----- 소상공인의 -----
-----.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소상공인 -----
-----.

1. 소상공인-----

2. 소상공인 -----
3. --- 소상공인-----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11명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전문가,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p>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소공인</u>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p> <p>④ (생략)</p> <p>제10조(수당) (생략)</p> <p>제11조(시행규칙) (생략)</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③ ----- ----- <u>소상공인 업무 담당과장</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던 도시형소공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중구에 소재한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한 자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센터의 운영을 전문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제3조)
- 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 마.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 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제14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36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부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복지지원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신당동)	1. 사례관리 2. 서비스제공 3. 지역조직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신당동)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사회복지과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다산로6길 11(신당동)	1.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서비스 제공 2.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필동로 96 (장충동2가)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남산실버복지센터	동호로5길 189 (신당동)	
	신당데이케어센터	다산로25길 6 (신당동)	
중구장애인복지관	퇴계로 460 (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2,4,5층	1.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재활·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 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주관 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복지 지원 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신당동)	1. 사례관리	복지 지원 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신당동)	1. 사례관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신당동)	2. 서비스제공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신당동)	2. 서비스제공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중립동)	3. 지역조직화		중립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중립동)	3. 지역조직화
사회 복지 과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다산로6길 11(신당동)	1.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서비스 제공 2.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사회 복지 과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다산로6길 11(신당동)	1.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서비스 제공 2.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신당케어센터	필동로 96 (장충동2가) 동호로5길 189 (신당동) 다산로25길 6 (신당동)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 보호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신당케어센터	필동로 96 (장충동2가) 동호로5길 189 (신당동) 다산로25길 6 (신당동)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 보호
	중구장애인복지관	퇴계로 460 (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2,4,5층	1.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재활·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중구장애인복지관	퇴계로 460 (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2,4,5층	1.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재활·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세종대로2길 15, 4층 (남대문로5가)	1. <u>작방 주민들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u>		<삭제>	<삭제>	<삭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우리구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남대문지역상담센터(쪽방상담소)가 시립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중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3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 나. 벽화·분수대·야외무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 다.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 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중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 및 부지 면적의 적합성
4.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조형물에 한정하며,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4. 출생지·활동지역·묘소 및 동명·가로명 등 관련성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 2.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30일 이내의 일시적인 설치
-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의서식]

공공조형물의 설치 계획서

1. 사업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질 :

4. 작품설명

5. 제작자

6. 사업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기타사항

[별지 제3호의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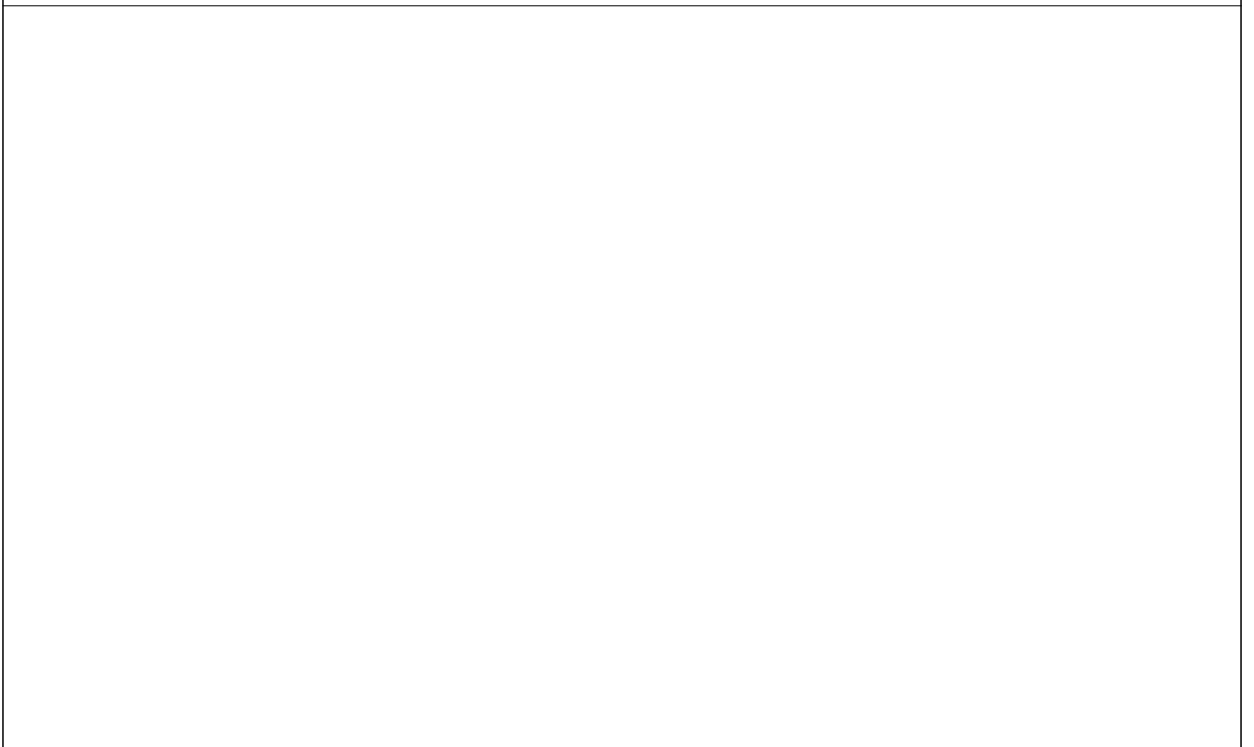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		주관부서	
설치목적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의 점검 내역		
점검일시	점 검 내 용	
	전 후 사 진	전
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		
보수일시	보 수 내 용	
	전 후 사 진	전

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사진



공공조형물의 점검 내역			
점검일시	점 검 내 용		
	전 후 사 진	전	후
	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		
보수일시	보 수 내 용		
	전 후 사 진	전	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부재에 따른 무분별한 건립을 사전예방
- 건립과정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민 의견수렴으로 공정성 확보
-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총 13조의 조례(총칙, 설치기준, 위원회 구성 등)로 구성
-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다.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및 비용부담(제4조~제5조)
- 라.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및 심의위원회 운영(제6조~제7조)
- 마.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처리 (제8조~제11조)
- 바.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제12조~제1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38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주택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 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지원 내용을 규정(제4조)
- 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대상 및 내용을 규정(제5조)
- 마.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제6조)